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88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이해민·조인철·한민수

김우영 · 김선민 · 조승래

신장식 · 오세희 · 정동영

신영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 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함(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병역특례 우선 배정)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병역특례 우선 배정)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
	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
	입 시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
	<u>정해야 한다.</u>